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44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▨▨▨

2. 조치내용

□ **(금감원 원안)** 고발

□ **(수정의결)** 주식을 매도할 사정이 있었고 매도자금을 회사채무 상환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'수사기관 통보'로 조치 변경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

○ ▨▨▨는 ㈜○○○○○의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로서 '18.4월 중순 경 '17년도 사업연도 내부결산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'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전환'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'18.5.11.~5.15. 기간 중 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법인 소유 ㈜○○○○○ 주식을 매도한 혐의가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·2·6호 , 제443조 제1항 제1호